



# News Release

Connect with DOL at  
[http://social.dol.gov!](http://social.dol.gov)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Public Affairs  
San Francisco, Calif.  
Release Number: 12-408-SAN (SF-64KO)

For Immediate Release

April 2, 2012

Contact: Deanne Amaden

Phone: 415-625-2630

Email: [amaden.deanne@dol.gov](mailto:amaden.deanne@dol.gov)

José A. Carnevali

415-625-2631

[carnevali.jose@dol.gov](mailto:carnevali.jose@dol.gov)

## 미국 노동부 임금 및 시간 분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레스토랑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시행 및 교육 계획 착수

**본 기관은 최저 임금, 초과 노동 시간, 기록 유지 및 미성년자 노동 위반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 미국 노동부 임금 및 시간 분과는 공정노동기준법의 최저 임금, 초과 노동 시간, 기록 유지 및 미성년자 노동에 관한 조항에 대한 광범위한 위반에 대항하기 위해 광역 샌프란시스코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레스토랑 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의 시행 및 교육 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레스토랑 업계에 대한 우리의 현재 집행 노력은 경악스러운 공정노동기준법 위반의 문화를 드러냅니다."라고 임금 및 시간 분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사무소의 디렉터인 수잔 린컨(Susana Rincon)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취약한 레스토랑 노동자들은 임금법 위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고, 직원들은 결국 수많은 형태의 임금 및 기타 노동법 위반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 계획의 한 부분으로 조사자들은 조사를 단행하고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을 해결하며 노동자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들이 그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고없이 방문할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본 분과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500 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68%의 레스토랑에서 공정노동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러한 위반의 결과 거의 2,500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 및 시간외 노동 임금으로 미지불한 금액이 2 백 십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본 분과는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에 대해 1,800 건 이상의 조사를 수행했으며, 그 중 71%가 공정노동기준법을 위반한 것과 그 결과 9,500 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1 천 2 백만 달러 이상의 체불 임금이 있음을 적발했습니다.

작은 이윤 - 특히 값싼, 소수 민족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의 - 때문에, 일부 지역의 고용주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낮은 인건비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위반 사항으로는, 노동 시간 전체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것, 노동자로 하여금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노동자를 시간외 노동 수당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외의 위반 사항에는 비면제 노동자에게 일한 시간외 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주는 것, 회계 장부에 전혀 기록이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적절한 최저 임금 및 시간외 수당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를 사취하는 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니폼 비용, 파손, 고객의 워크아웃(손님이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것) 및 금전 등록기의 현금 부족분 등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는 것 또한 자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이전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노동 위반 사항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반죽 믹서기나 고기 절단기와 같은 위험한 장비를 작동하도록 허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조사자들은 체불 임금의 징수 및 지불, 민사상 금전적 처벌과 손해 보상 금액에 대한 사정, 그리고 소송을 포함하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된 시설에 대한 정보는 해당 분과의 실행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것이며, 이것은 <http://ogesdw.dol.gov>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잇 샵 슬립(Eat Shop Sleep)"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액세스도 가능한데 이것은 노동국의 앱 웹사이트 <http://www.dol.gov/dol/apps/winners.ht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직원 및 기타 일반 대중이 그 앱을 이용하여 어떤 한 레스토랑, 호텔 혹은 소매 시설이 분과의 조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조사에서 공정노동기준법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법 준수 여부 기록을 공공이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법을 준수할 동기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또한, 노동자 및 고용주들과 공정노동기준법 준수 지원 정보를 나누고, 업계 전반의 준수 및 책임을 촉진함에 있어 그들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자 옹호 단체 및 고용주 협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자신들이 미성년자 노동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 분과는 기밀 온라인 설문 조사인 레스토랑 고용주 자체 평가 도구(Restaurant Employer Self-Assessment Tool)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http://www.youthrules.dol.gov/selfassess\\_restaurant.htm](http://www.youthrules.dol.gov/selfassess_restaurant.htm)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노동기준법은 보상을 받는 비면제 직원은 모든 노동 시간에 대해 적어도 연방 최저 임금인 \$7.25 을, 그리고 주당 40 시간을 초과한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시간 수당의 1.5 배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팁을 받는 직원의 고용주는 팁 이외에 받는 액수가 적어도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 가 되도록 시간당 \$2.13 이상을 직접 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팁과 고용주의 직접 임금의 합이 최저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18 세 이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 및 위험한 직종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할뿐 아니라, 직원에게 공정노동기준법의 팁 신용 조항에 대해 알려주고, 정확한 시간 및 급여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정노동기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임금 및 시간 분과의 전국 무료 상담 전화, 866-4US-WAGE (487-9243) 또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415-625-7720 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www.dol.gov/whd>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